



금감원,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2012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12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.

- 2010년 2월 12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간접손해보험금,¹⁾ 자기부담금 반환, 특약보험금, 휴면보험금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존재하는 자동차 사고 접수 건을 점검대상으로 함.
- 2012년 6월 말 기준 4개 점검항목에 대한 미지급 자동차보험금은 326억 4,000만 원이었으며, 점검기간 중 168억 5,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.
-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 8,000만 원이며,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이 136억 8,000만 원으로 대부분(86.7%)을 차지함.

■ 금감원은 미지급 자동차보험금이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.

-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여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.
- 보험 가입 또는 사고 접수 시 간접손해보험금 및 특약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하도록 함.
-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하여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, 특약 가입사항 안내 POP-UP 및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검증 기능이 확보되도록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함.
-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 받도록 함.
- 손해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함.

(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, 금감원, 12/5)

1) 대차료(비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0% 현금보상), 휴차료(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), 자동차시세하락손(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후 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액)을 말함.